


붙임 4

취업지원대상자 정보 입력 방법

제 호	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		
취업지원 대상자	보훈번호		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
	성 명		생년월일 (성별)
	주 소		전화 번호
용 도	채용시험 가정	가정비율	
제 출 처	한국산림복지진흥원		
<p>위 사람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정 등)에 따라 가정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훈지청장</p> 			
<p>유의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사실을 소재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. 취업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 (http://job.mpva.go.kr) 에서 제공되는 취업자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			
우	주소	전화	전송 --
담당부서명:	보훈과	과장:	주무: 담당자: 전자우편:

구분	입력방식
증명서명	“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”를 발급받아 확인
보훈번호	증명서 내 기재된 번호 작성(예시. XX-XXXXXX)
가정번호	증명서 내 기재된 비율 작성(예시. 5% 또는 10% 입력)
제 출 처	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”으로 발급받아야 함